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102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6년 4월 7일
- 회부일 : 2016년 4월 12일

2. 제안이유

-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 욕구에 반해 민간사유 시설에 조성된 일부공간의 경우 임대계약 만료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적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 폐지·방치된 유휴시설(가압장)의 임대 및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주도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운영 개요

- 시설명 :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신림2가압장)



사진설명

신림2가압장 출입문 전경 및 내부 수리 공사 현장

- 규모 : 지상1, 2층 건물연면적 248.56㎡
- 공간구성 : 카페(공유키친), 공연장, 어린이 독서공간, 다목적 공간 등
- 운영인력 : 행복나무 운영위원회(22명)
 - 주민설명회 이후 공개 공모를 통해 구성된 22명으로 추진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자체 회의에서 운영 실무를 담당할 실무단 구성(4~7명)하여 운영 예정
- 주요 사업
 - 행복나무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사업 : 마을리더 문화콘텐츠 제작 및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행복나무 마을학교 : 참여형 마을학교 구축 및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행복나무 문화복합공간 카페운영 : 자치회관 베이커리교실 연계를 통해 특성화된 주민참여 문화공간 카페 운영, 지역문화예술가를 위한 전시공간 제공 및 예술작품 판매지원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6. 5. 16 ~ 2018. 7. 30.

○ 위탁업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2016년 편성예산 없음.

- 비영리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소대관 등 자체 수입으로 사용(인건비, 운영비 등 자체 운영 수입으로 부담)
- 민간위탁 후 시비 지원은 없음.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신규,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 2015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마을활력소 관련 추진위원을 공개 공모하여 마을활력소 추진운영위원회 구성(22명)
- 6회에 걸친 워크숍 및 타지 커뮤니티 공간 탐방 등을 통해 신림2가압장을 마을활력소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안 확정 및 공사 계획에 참여
- 이 과정을 책임 있게 진행한 신규 마을공동체인 행복나무 운영위원회에 수의협약 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희 가압장 활용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계획
(마을공동체담당관-9323호, 2015.10.2.)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활력소는 유희가압장 건물을 재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민

간위탁하고, 위탁기관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경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이 예상되는 직접 운영에 비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성·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마을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나눔터 및 사랑방 조성으로, 주민이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활성화는 민간 운영이 효율적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 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검토 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폐지·방치된 유희시설(가압장)의 임대 및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마을활력소를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마을활력소(신림2가압장) 현황

- ①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513, 808-540
- ② 건물연면적 : 248.56㎡
- ③ 규 모 : 지상1, 2층
- ④ 주요 시설 : 카페(공유키친), 공연장, 어린이 독서공간, 다목적 공간 등
- ⑤ 소요예산 : 297,600천원
 - 공사비 269,500천원, 설계비 21,900천원, 감리비 4,200천원, 부대비 2,000천원
- ⑥ 공간 활용방안

구 분	공간 활용	구 성
2층	다목적공간	다목적실 / 영유아휴게실 / 운영사무실 / 라카룸
	놀이터	놀이시설 / 휴게공간
1층	카페 및 공연장	카페(공유키친) / 공연장 / 준비실 /창고
	독서공간(복층)	어린이독서방

- 본 동의안은 약 2년 4개월 동안(2016. 5. 16 ~ 2018. 7. 30)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등 마을활력소의 운영을 “행복나무 운영위원회”에 신규로 수의협약 하고자 하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16. 5. 16 ~ 2018. 7. 30(약 2년 4개월).
- 위탁업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2016년 편성예산 없음.**

- 비영리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소대관 등 자체 수입으로 사용(인건비, 운영비 등 자체 운영 수입으로 부담).
- 민간위탁 후 시비 지원은 없음.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신규,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 2015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마을활력소 관련 추진 위원을 공개 공모하여 마을활력소 추진운영위원회 구성(22명)
- 6회에 걸친 워크숍 및 타지 커뮤니티 공간 탐방 등을 통해 신림2 가압장을 마을활력소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안 확정 및 공사 계획에 참여
- 이 과정을 책임 있게 진행한 신규 마을공동체인 행복나무 운영위원회에 수의협약 하고자 함.

나.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마을활력소는 시·자치구에서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약 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유휴 가압장 1곳을 시범 조성하고 있음.

천연가압장

○ **시설물 현황(재산관리관 : 서부수도사업소장)**

- 건 립 : 1962년
- 위 치 : 서대문구 천연동 98-1
- 규 모 : 대지면적 105 m^2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165 m^2



○ 소요예산 : 242,400천원

- 공사비 220,000천원, 설계비 17,843천원, 감리비 3,710천원, 부대비847천원

○ 공간 활용방안

(단위 : m²)

구 분	공간 활용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연면적	구 성
2층	프로그램실 1	17.6	-	17.6	작업 및 강의 / 소규모 모임실
	프로그램실 2	19.5	-	19.5	문화예술 배움터공간
	복도 및 휴게실	-	33.0	33.0	수납 / 탕비 / 뒷마루
1층	다목적홀	51.8	-	51.8	강의 / 작업 / 행사용 홀
	공유주방	23.8	-	23.8	주방 / 작업테이블
	사무실	5.5	-	5.5	사무실기기 / 1인 근무
	화장실 및 창고	-	14.0	14.0	화장실 / 계단하부창고
합 계		118.2	47.0	165.2	

※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 시설에 조성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이 미흡(임대계약 만료, 젠트리 피케이션)함에 시, 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 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제27조제4항 신설)을 통해 법적근거는 마련하였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집행부는 2015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희 가압장 임대차 계약(8월)을 진행하였으며, 마을활력소 관련 추진위원 공모 등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추진위원회가 리모델링안의 확정 및 공사계획에 참여한바 있음.

※ 리모델링은 2016년 4월 완공 예정임.

■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5. 5월 ~

○ 협의회 구성

- 시(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사업팀장), 자치구(담당팀장, 주민자치센터 담당팀장),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마을생태계팀장)

○ 협의회 운영

- 역할 : 신림2가압장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소통 채널

■ 주민설명회 개최

- 신림2가압장 : '15. 7. 3(금), 삼성동 주민센터

■ 유희 가압장 임대차 계약 체결

- 가압장 대부계약 체결 : 3년 유상임대 ('15. 8. 1 ~ '18. 7. 31)

- 신림2가압장 46,259,990원

■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위원 공모 : '15. 8. 3 ~ '15. 8. 17

■ 추진위원 워크숍 개최 및 추진위원회 운영

○ 추진위원 워크숍 개최

- 일 시 : 신림2가압장 8. 20(목)
- 참석자 : 가압장별 추진위원, 사구 공무원 및 마을공동체 관계자, 촉진자(facilitator) 및 공공건축가

○ 추진위원회 운영 : ~ 9. 18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마을교육 및 마을탐방 실시
- 공간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 신청사업 조정 및 공간 활용 협의
-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리모델링 및 운영계획(안) 수립

- 집행부는 동 과정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에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을 수의협약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통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마을활력소에 대한 민간위탁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방식 및 추진 절차에 있어서 향후 조성예정인 천연가압장 등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 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1)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조건부 적정) 하는 심의결과를 받은바 있음.

1)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둘째,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필요적 사전절차 전에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셋째, 집행부는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시 위탁기관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경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이 예상되는 직영에 비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동 방식에 대한 시의회 법률 자문 결과,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구분	의견 1	의견 2	의견 3
	위법소지 있음	법령에 위반됨	적법
동 위탁계약 방식이 「지방재정법」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위배될 소지 있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15조에 위반됨.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동 위탁계약 방식이 「지방재정법」제3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 반할 가능성 있음.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 반함.	동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음.

- 넷째,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위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위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복나무 운영 위원회」로 위탁기관 선정시 동 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한편,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간조성 후 지속적인 운영주체와 안정적인 재원, 위탁기관 관리·감독 문제²⁾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수탁자 세부현황

1. 명 칭(대표) : 행복나무 (김창룡, 박보아, 류대현)
2. 소재지(전화번호)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43 (신림동 1513, 808-540)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상임대표 김창룡
3. 설립목적 :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마을사랑방)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5. 10. 07	임시공동대표 6인 선출
2015. 12. 09	마을활력소 공간 명칭 선정 및 정식임원 5인 선출

5. 주요사업

- 행복나무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사업 : 마을리더 문화콘텐츠 제작 및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행복나무 마을학교 : 참여형 마을학교 구축 및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행복나무 문화복합공간 카페운영 : 자치회관 베이커리교실 연계를 통해 특성화된 주민 참여 문화공간 카페 운영, 지역문화예술가를 위한 전시공간 제공 및 예술작품 판매 지원 등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상임대표	김창룡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박보아	청년인재지원센터
총무	류대현	꿈터예술학교
실무	허성기	아름다운다락방
감사	하상대	삼성동 시장상인회

7.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 실무단이 운영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실무단장	허성기	해당 없음	실무전반 담당		운영위원
총무	박보아	해당 없음	운영전반		운영위원
총무	류대현	해당 없음	운영전반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실무단에서 운영 전반업무 수행

8. 운영 조직도

1. 운영위원회 : 임원(상임대표, 총무2명, 실무단장, 감사)을 포함한 10인이 상 15인 이하의 운영위원
2. 실제 업무수행 : 실무단을 중심으로 운영예정

9.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명단(22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성별)
1	삼성동주민자치위원회(운영위 상임대표)	김창용	남
2	삼성동 시장상인위원회(운영위 감사)	하상대	남
3	청년인재센터(운영위 총무)	박보아	여
4	꿈터예술학교(운영위 총무)	류대현	남
5	아름다운다락방 미루(운영위 실무)	허성기	남
6	녹색교육환경봉사단(위원)	김상표	남
7	마을안락은영어도서관(위원)	서황희	여
8	삼성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양진열	남
9	품앗이 일상학교(위원)	전미정	여
10	삼성동 시장상인회(위원)	박영주	남
11	관악스토리 마을기자단(위원)	송규명	남
12	삼성동 문고회장(위원)	유정임	여
13	관악구소상공인축산협동조합(위원)	이광국	남
14	어반하이브리드(위원)	이상욱	남
15	관악구 소상공인회(위원)	이시현	남
16	삼성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이정희	여
17	사단법인 청소년의 꿈(위원)	이현숙	여
18	이웃사랑방(위원)	전성현	여
19	책꿈맘(위원)	진추국	여
20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원)	최윤정	여
21	해밀다운사람들(위원)	최종광	남
22	삼성동 독거노인자원봉사단(위원)	하옥선	여